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의 원활화 이수방안 연장적용 안내

□ 검토 배경

-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, '20년 1학기에 운영한 예비교원의 학교현장실습, 교육봉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한 원활화 이수 방안을 '20년 2학기에도 적용 필요

□ 운영 방안

◆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비교원의 학교현장실습, 교육봉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**2020학년도**에 한해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(1학기 방안을 2학기에 동일 적용)

① (학교현장실습) 운영 방식, 기간 조정 가능

-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·실습협력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되,
-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불가피한 경우 직접실습을 4주에서 2주로 조정하고, 예비교원이 실습협력학교의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

구분	기 존	2020학년도 운영 가능
방식	▪ 학교현장에서 직접 수업, 참관, 실무 실습	▪ 원격 방식의 직접실습,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실습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
기간	▪ 2학점 4주 이상 ※ 1학점 당 2주(또는 80시간 이상)	▪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실습을 1학점(15시간 이상)으로 포함하여 운영 가능 ※ 직접실습 2주(1학점) + 간접실습 1학점(15시간 이상)

※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득예정 자격증의 표시과목 및 학교급과 동일한 교육실습이 어려운 경우, 양성기관 장의 책임 하에 최대한 유사 범위에서 학교현장실습 실시

② (교육봉사활동) 교원양성기관장이 운영하는 방식 가능

기 존	2020학년도 운영 가능
▪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	▪ 2020학년도에 한해 대학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(온라인 포함)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운영,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

※ (예시) 대학 자체적으로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원격수업 지원단 운영 등

③ (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) 2020학년도 졸업 예정자에 한해 온라인 대체 이수 인정 가능

- 이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마련

④ 코로나 19 확진·격리 시 대체 이수 가능

- 실습학교 구성원 또는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실습이 불가할 경우,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대체프로그램 운영, 이수 인정 가능

※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이 코로나19 관련 장소방문 또는 유증상자 접촉 시, 즉시 실습협력학교에 통보하고 자가격리, 진단검사 실시할 것을 사전 안내